

중서등 재발급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 소	(전화번호)	
어선 내역	어선번호		
	어선의 명칭	총 톤 수	톤
	진수연월일	년 월 일	[]강 []목 []강화플라스틱(FRP) []그 밖의 재질()
	선 적 항		
신청 내용	증 서 명		
	증서번호	제 호	교부일자 년 월 일
	신청사유		
	잃어버린경위		

「어선법」 제18조,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어업관리단장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
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
한 국 선 급 회 장

구비서류	1. 헐어 못쓰게 된 경우: 해당 증서 등 2.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: 해당 증서 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조례 또는 대행검사기관 수수료 기준에 따름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제 출 처: 해양수산부, 시·군·구, 영사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한국선급
- 재발급하는 증서의 종류
 - 어선(건조·건조발주)허가서·어선(개조·개조발주)허가서·어선건조(건조발주·개조·개조발주)허가사항변경허가서,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, 국제톤수증서·국제톤수확인서, 재화중량톤수증서, 선박국적증서·선적증서·등록필증, 선박국적증서영역서, 어선검사증서, 어선특별검사증서, 임시항행검사증서, 건조검사증서, 예비검사증서, 검정증서, 건조(제조·정비)확인증, 별도건조검사증서,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, 형식승인증서,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, 지정사업장 지정서,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, 어선중개업 등록증, 출항정지명령서
- 재발급 받으려는 해당 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.